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발행: 2017년 4월 20일	번호: A-125
제목:	비거주자 등록		페이지: 1 중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갱신되었습니다:

- 본 규정은 위탁가정 및 임시 거주지에 기거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이 학생들은 위탁가정에 배정받은 시점이나 뉴욕시 밖으로 이주한 시점에 뉴욕시에 살면서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뉴욕시의 본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개요, 각주1, 페이지 1).
- 뉴욕주에 거주하고 79학군 기숙 프로그램에 등록 또는 배정된 비거주자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섹션 I.A., 각주 2, 페이지 1.)
- 학부모(parent)란 단어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학생의 양육이나 보호를 책임진 기타 모든 사람을 지칭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의부모, 법으로 정한 보호자, 위탁부모 및 "양육을 책임진 사람". "양육을 책임진 사람(person in parental relation)"이란 사망이나 투옥, 정신병, 다른 주에 거주, 또는 자녀유기 등의 이유로 아동의 보호자 부재 시, 이 아동의 양육을 맡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섹션 I.B., 각주3, 페이지 1.)
- 부모가 가짜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지 증빙을 하였거나 비거주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이 판단하면 학부모는 반드시 비거주자로 학생이 등록된 각 학년도 또는 학년도의 일부에 대한 등록금을 소급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섹션 I.F., 페이지 1.)
-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등록금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섹션 II, 페이지 2.)
- 현재 교육청 절차에 사용되는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 연락 정보를 개정하였습니다. (섹션 VII, 페이지 3 및 4.)

개요

이 규정은 뉴욕시 비거주자 학생의 뉴욕시 공립 학교 입학, 제적 및 전학에 관련된 정책을 규정한다. 비거주자란 주 거주지가 뉴욕시가 아닌 학생으로서 교육감 규정 A-101에 명시된 뉴욕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1]

I. 총칙: 비거주자 등록

A. 뉴욕주 교육법 제 3202항에 의거해, 만 5세 이상 21세 이하의 학생은 자신이 거주하는 학군(district)에서 무료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거주자의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은 뉴욕시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금 납부를 요한다.[2]

B. 비거주 학생의 부모[3] 또는 비거주 독립 학생 및 비동반 미성년자는 반드시 공립학교 선택 (PSC) 프로그램 및 지속적 위험 학교 (PDS)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해야 한다.

C. 비거주자 학생들은 특수목적 학교, 시험/선발을 통한 학교나 프로그램, 영재 프로그램 또는 유아원 프로그램에 재학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비거주자들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및 영재 프로그램 지원이나 유아원 지원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의 예외는 오직 학생등록 담당실(Office of Student Enrollment :OSE)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섹션 IV에 명시된 바와 같이 뉴욕시 거주자였던 학생이 학년도 중에 뉴욕시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고려될 수 있다.

D. 비거주자로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은 학생 통학 담당실(Office of Pupil Transportation)에서 제공하는 통학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E.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가 학생이 비거주자란 사실을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뉴욕시 교육청에서 학생이 비거주자라 판단했을 경우, 이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남은 기간 동안 다니던 학교에 계속 재학할 권리를 박탈당하며,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학기(semester) 종료 시점에 학교에서 제적된다. 또한 이러한 학생은 비거주자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재학할 수 있도록 신청할 자격도 박탈당한다.

F. 부모가 가짜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지 증빙을 하였거나 비거주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이 판단하면 해당 학생은 이와 같은 사실이 판별된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다니던 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이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남은 기간, 또는 다음 학년도에 입학신청을 할 수 없다. 부모는 학생이 비거주자로서 학교에 등록하였던 각 학년도 또는 학년도의 일부를 모두 소급하여 등록금을 납부한다. 정황을 참작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오직 학생등록담당실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

[1] 본 규정은 위탁가정 및 임시 거주지에 기거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학생들은 위탁가정에 배정받은 시점이나 뉴욕시 밖으로 이주한 시점에 뉴욕시에 살면서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뉴욕시의 본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2] 본 규정은 제 75학군 병원학교, 위탁가정/ACS 가디언십 또는 79학군 기숙 프로그램 및 일부 차터스쿨에 등록 또는 배정된 뉴욕주 주민인 뉴욕시 비거주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본 규정에서 말하는 학부모(parent)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학생의 양육이나 보호를 책임진 기타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학부모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의부모, 법으로 정한 보호자, 위탁부모 및 "양육을 책임진 사람". "양육을 책임진 사람(person in parental relation)"이란 사망이나 투옥, 정신병, 다른 주에 거주, 또는 자녀유기 등의 이유로 아동의 보호자 부재 시, 이 아동의 양육을 맡은 사람을 지칭한다.

G. 비거주자로서 자녀를 뉴욕시 공립학교에 보내는 교육청 직원이 적절한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 감찰 커미셔너(Special Commissioner of Investigation)에 의한 조사 및 징계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II. 비거주자 학생의 지원 절차

뉴욕시 주민이 아닌 학부모 (거주 규정은 교육감 규정 A-101 참조)가 등록금을 지불하고 자녀를 뉴욕시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생등록담당실(OSE)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는 학생 등록 담당실 웹사이트에서 제공: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NewStudents/Non-Residents. 본 지원서는 신규 비거주자 학생용이며, 매해 여름 비거주자 등록기간에 배부된다.

A. 비거주자 학생의 지원을 승인할 책임은 오직 OSE에만 있다. 각 학교에서는 OSE에서 승인하지 않은 비거주자 학생을 등록시킬 수 없다.

B.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신규 비거주자 학생은 반드시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서는 OSE에서 정한 비거주자 지원 기간에만 심사된다.

C. 비거주자 학생의 입학 우선권은 제일 먼저 뉴욕시 교육청 직원 자녀, 다음은 기타 뉴욕시 기관 직원, 그리고 기타 학생들 순이다.

D. OSE에서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배정을 받기 전에는 학교 시작일에 관계없이 비거주자 학생의 입학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거주자 학생은 비거주자 지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학생이 거주하는 학군(home district)에서 규정한 바에 의거해 학교에 다녀야 한다.

E. 비거주자 학생의 지원서가 승인된 경우, 학생등록 담당실에서 해당 학생 가정에 통지한다. 학생은 등록금 납부가 개시되었고, 거주자 등록을 위한 모든 구비서류가 해당 학교에 제출된 후 입학 승인 받은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을 등록시킬 때 ATS에 비거주자 등록금 납부 학생 플래그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F. K-12 학년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 등록금 액수는 매년 뉴욕주 교육부에서 정한다. 해당 학년도 별로 고지된 등록금 전액 은 반드시 해당 학년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 납부에 관한 정보는 비공립학교 지불사무국(Bureau of Non-Public School Payables)에 전화 (718) 935-4789번으로 문의한다

G. 현재 거주하는 학군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반드시 최신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사본을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뉴욕주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학생의 경우, IEP 검토 결과 추천 서비스가 뉴욕시 내에서 제공 가능하고, 모든 뉴욕시 거주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은 후 배정이 이뤄진다.

2. 뉴욕주 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학생의 경우, IEP 검토 결과 뉴욕주 기준에 근거해 서비스 수혜 자격이 있고, 해당 서비스가 뉴욕시 내에서 제공 가능하며, 모든 뉴욕시 거주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은 후 배정이 이뤄진다.

III. 현재 비거주자인 학생

A. 이전에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승인 받은 현재 비거주자 학생으로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은 재지원 절차 없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최종학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뉴욕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또는 중학교 입학전형 등의 기타 일체의 입시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B. 특수교육을 받기 위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현재 비거주자 학생들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일단 서비스가 시작되면, 등록금 액수는 특수교육 등록금을 반영하여 변경된다.

C. 비거주자 학생은 OSE에서 참작 가능하다고 인정한 긴급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년도 중 학교간 전학을 할 수 없다.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지원기간 내에 신규 지원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IV. 학년도 중 뉴욕시 밖으로 이사 가는 가정

A. 뉴욕시 내에 거주하던 학생이 학년도 중에 뉴욕시 밖으로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이 사실을 고지하고 거주지가 변경 된지 5 수업일 이내에 신규 주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생의 주소를 갱신하고 ATS에 비거주자 플래그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 학기(semester)가 종료될 때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다. 만일 학생이 첫 학기(9월-1월) 중에 뉴욕시 밖으로 이사 갔을 경우, 2학기(2월-6월)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학기란, 학년에 상관 없이 고등학교의 학기제에 따른다.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재무국 비공립학교 지불사무실(Bureau of Finance, Office of Non-Public School Payables)에 전화 (718) 935-4789번으로 연락한다.

B. 뉴욕시 거주자로서 영재 프로그램, 유아원 프로그램 또는 특수목적 학교나 시험/선발절차로 입학하는 학교에 재학하던 중 학년도 중에 뉴욕시 밖으로 이사 가는 학생은 반드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린다. 이러한 학생은 첫 학기에 이사간 경우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학년도가 종료될 때까지 다니던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계속 다닐 수 있다. 학년도가 끝나면 해당 학생은 더 이상 현재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남을 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그 다음 학년도에 이러한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비거주자 학생 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대한 예외는 학생등록 담당실에서 결정한다.

V. 써머스쿨

써머스쿨 프로그램은 모든 뉴욕시 거주 학생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난 후에도 자리가 날 경우, 비거주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다. 이 때 써머스쿨 등록금은 뉴욕주 교육부에서 정한 바에 의해 납부한다.

VI. 비거주자 등록 종료

A. 비거주자 학생의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은 뉴욕시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비거주자 학생이 정시에 등록금 납부하는 것에 실패했을 경우,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의 등록 승인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B. 등록금 정시 미납으로 인해 학생을 제적할 경우, 학부모에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취한다:

1. 학생을 제적하기로 한 학교의 결정을 통지한다;
2. 학교장/대리인과 면담을 통해 제적 이유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부여한다;
3. 면담 후 학생의 제적 여부를 서면으로 알린다.

VII. 질문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전화:	*Office of Student Enroll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415 New York, NY 10007	팩스:
718-935-2142		---

등록금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전화:	*Office of Non-Public School Payables* *Re: Non-Resident Tuition* NYC Department of Education 65 Court Street Brooklyn, NY 11201	팩스:
718-935-4789		---